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정책과 정대진 과장(2110-5111), 최은신 사무관(2110-5115)

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공고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'**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**'을 선정,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

○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7.11일 개최된 **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**에서 **"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"**으로 마련된 융복합 규제 및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임

○ 융합을 통한 **실질적 기업경쟁력** 확보를 위해 **기업의 융합역량 강화와 초기시장 창출애로 해결방안**을 함께 마련함

* 중소·중견기업의 융합 제품은 기술력·상품성을 확보하더라도 높은 초기 판매가격,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시장진입, 창출에 한계

□ 산업부는 **'산업융합품목' 및 '산업융합 선도기업'**을 선정하고, **중소기업청,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**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

○ **(산업융합품목)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**로서, 성능·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고, **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** 대상*으로 포함할 예정임

*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및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기 위해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

○ **(산업융합 선도기업) '산업융합품목' 생산기업**이면서 기업의 융합 역량이 우수하고, 사업성 및 건전성 등을 충족하는 **중소·중견기업**을 선정하고, 이들 기업에 대한 **연구개발**(R&D), **인력, 금융, 시장확대, 컨설팅**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

□ 정부는 「**산업융합 촉진법**('11.4월 제정, '11.10월 시행)」제정을 바탕으로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왔음

○ 산업융합 활동이 확산되고 인식도 제고되는 흐름이지만, 여전히 **기업의 체감 수준은 융합 초기 단계**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

* 산업융합 진전도 설문조사 ('12년, 산업융합지원센터) : 시작~초기 확산 단계 85.4%

○ 산업부 관계자는 "산업융합품목과 선도기업을 통해 **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, 확산**토록 하는 한편, 앞으로도 **중소·중견기업**이 느끼는 융합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·지원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음

별첨.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선도기업 선정 공고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최은신 사무관(☎ 02-2110-51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- 283호

2013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

「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-114호)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산업융합 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0월 10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1. 사업목적

□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·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,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"산업융합품목" 및 "산업융합 선도기업"을 선정하고,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

2. 주요 사업내용

□ 산업융합품목

가. 지원내용

○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

○ "산업융합품목"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"산업융합 선도기업"에 지원 가능

나. 선정대상

○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, 아래의 '산업융합평가'를 통해 성능·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품목

< 산업융합품목 평가 >

평가	평가요소	내용
산업융합품목 평가	기술(산업)의 창의적 융합화	동종/이종 기술 기능 서비스 적용수준 및 창의성
	혁신적 기능 및 활용성의 창출	구현 기능의 혁신성 및 활용성, 상대적 우수성
	사회적 가치의 창출	사회적 수용성, 사회적 혁신 및 문화형성 가능성
	시장적 가치의 창출	경쟁우위, 경제적 발전가능성 및 파급정도

다. 자격유지기간

○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, 기간 종료 후 재심사

□ 산업융합 선도기업

가. 지원내용

○ "산업융합 선도기업"으로 선정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

*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(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 등),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'중소기업'으로 제한 될 수 있음

<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>

구분		지원내용	담당기관
기술확보	R&D	○ 융합 관련 사업 및 과제 신청 시 **가점 부여** - 산업융합촉진사업(3점), 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(2점)	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	기술지원	○ '생기원 글로벌 기업육성'사업 신청 시 **우대지원**	한국생산기술연구원
		○ '융합형 기업역량강화서비스 프로그램' 신청 시 **가점 5점 부여**	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
인력		○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 사업 신청 시 **가점 2점 부여**	산업기술연구회
		○ 산업융합 영마이스터 프로그램, 산업융합특성화 인재 양성 사업 참여 학교와 연계하여 **기업 구인 홍보지원**	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
금융		○ 기술보증 신청 시 **보증료 감면 및 우대** - 기술·산업융합특례보증(보증료 0.3% 감면,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시 6개월로 기간완화) - 스마트 융합보증(보증료 0.3% 감면, 한도우대)	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
시장확대		○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사업 신청 시 **우대 지원**	중소기업유통센터
		○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**기업 홍보지원**	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
컨설팅	정보제공	○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**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무상제공**	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
	지식재산	○ 지식재산 관련 사업 신청 시 **가점 3점 부여** - 지재권 중심의 기술 획득전략 수립 지원사업, 첨단부품소재 IP-R&D전략 지원사업,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	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
네트워크		○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**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** (年2회 지원)	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

나. 선정대상

○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, '산업융합품목 평가'와 '기업역량 평가'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

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산업발전법」제10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,
② 동 공고에 따른 "산업융합품목"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,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

< 산업융합품목 평가 및 기업역량 평가 >

평가	평가요소	내용
산업융합품목 평가	기술(산업)의 창의적 융합화	동종/이종 기술 기능 서비스 적용수준 및 창의성
	혁신적 기능 및 활용성의 창출	구현 기능의 혁신성 및 활용성, 상대적 우수성
	사회적 가치의 창출	사회적 수용성, 사회적 혁신 및 문화형성 가능성
	시장적 가치의 창출	경쟁우위, 경제적 발전가능성 및 파급정도
기업역량 평가	사업능력	사업매력도, 제품화 능력
	경영관리 능력	경영자 능력, 경영관리 기반 역량, 변화대응 능력
	재무적 건전성	매출액,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 및 생산성
	지식 및 혁신역량	산업융합 활동현황, 기술/생산 역량, 인적자원 역량

다. 자격유지기간

○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, 기간 종료 후 재심사

3. 선정절차



* 현지실사는 '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' 신청에 한해 실시

4. 신청요령

□ 신청방법 및 일정

○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knicc.re.kr)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(택배) 제출

○ 신청 접수기간 : 2013. 10. 11(금) ~ 2013. 10. 31(목) 18:00까지

* 신청서 양식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
□ 제출기간

○ 제출기간 : 2013. 10. 31(목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□ 제출서류

< 산업융합품목 선정 제출서류 >
① 산업융합품목 신청서 원본 1부
② 산업융합품목 신청양식 10부(원본 1부, 사본 9부)
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
④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(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, 수상 및 인증 실적 등)

<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제출서류 >
①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부
②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10부(원본 1부, 사본 9부)
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('10년, '11년, '12년) 각1부
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각1부
⑤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(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, 수상 및 인증 실적 등)

*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

□ 접수·문의처

○ 접수처 : (우)426-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(사동 1271-18번지)
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융복합동 210호

*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

○ 문의처

-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정보분석팀 이인수팀장
(☎ 031-8040-6786, ✉ islee@kitech.re.kr)

5. 유의 사항

□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접수기간 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○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

(ㄱ)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(ㄴ)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
(ㄷ)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 등급 'BBB'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), 자본전액잠식,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미반영" 또는 "부정적"인 경우

(ㄹ)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)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
○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